

법령코너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 - 325호

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(온열시트)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년 10월 20일
기술표준원장

「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」제정(안) 입안예고

1. 제정 취지

자동차, 사무실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열시트에서 화재가 발생 하는 등 소비자 안전 위해의 우려가 크므로, 기본적인 품질 및 정격입력 시험, 정상온도 상승시험, 이상온도 상승시험 등의 성능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 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온열시트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품질 및 성능을 규정하고, 정격 입력시험에서 정격입력 50 VA 이하의 것은 허용차율 +20% 이하로 규정
- 정격 입력시험에서 정격입력 50 VA 초과인 것은 허용차율 +10% 이하로 규정
- 정상온도 상승시험에서 통상 동작 온도는 시트의 표면 온도가 60 ℃를 넘지 않아야 함을 규정
- 이상 온도 상승시험에서 인체 모형과 접촉하는 유연부의 온도는 조절 가능 기기의 경우 160 ℃를 넘어서는 안되며, 그 이외의 기기는 온도 상승값이 145K를 넘어서는 안됨을 규정
- 무릎 충격시험은 50,000회를 실시 한후에 단선, 단락, 파열, 누전 등이 없어야 함을 규정
- 연소시험에서 연소 속도는 100mm/min 이하 이어야함을 규정

3. 「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」 제정(안)내용

- 제정(안): 별 첨

4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2009. 11.9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- 다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※ 연락처 :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

○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(우 427 - 723)

○ 전화/팩스 : 02-509-7246~9/02-509-7302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 - 326호

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제22조제1항에 의거 안전·품질표시대상 공산품(고령자용 신발, 시각장애인용 지팡이,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, 고령자용 목욕 의자, 고령자 위치추적기, 스테인레스 수세미)의 안전·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년 10월 20일
기술표준원장

「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 표시기준」제정(안) 입안예고

1. 제정 취지

‘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화보를 위해 고령자 및 장애인용품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사항 및 주요 안전 성능에 대한 기준치를 규정하고,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안전 성능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고령자용 신발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품질 및 성능을 규정
 - 신발 안감에서 폼 알데하이드의 검출량은 30 mg/kg 미만 이어야 함
 - 신발 안감 및 안창의 pH 값은 4.0이상 ~ 7.0 이하이어야 함
 - 신발 안감 및 안창의 6가 크롬의 함량은 1 ppm 이하이어야 함

-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의 기본적인 안전요건을 규정
 - 손가락 등이 닿는 부분에는 상해를 주는 거스러미, 돌기, 바리 등이 없어야 함
 - 마무리는 양호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함
 - 손잡이 위쪽으로 휴대와 보관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줄과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함
 - 몸체 겉 표면에는 반드시 재귀 반사시트지를 부착하여야 함
 - 외접이식 지팡이는 쉽게 접이가 가능하고 고무로프는 사용 중 용이하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는 장력으로

고정되어 있어야 함

□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의 기본적인 안전요건을 규정

- 길크양의 다듬질은 양호하고 현저한 결점이 없을 것
-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가 없고 모서리 부분은 매끄러울 것
- 도장면의 보이는 부분은 광택, 색조가 균등하고 도장 얼룩, 흘러내림 등이 없을 것

□ 고령자용 목욕의자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품질 및 성능을 규정

- 등받이 내구성은 각부에 파손, 사용시 지장이 생기는 변형이 없어야 함
- 목욕의자의 미끄럼 저항 시험에서 의자에 60kg의 추를 올려놓고 180N의 힘으로 당겼을 때 5m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함
- 금속 재료의 내식성에서 레이팅 No10 이어야 함

□ 고령자 위치 추적기의 기본적인 안전요건을 규정

- 위치 추적기의 유해물질은 납, 수은, 6가 크롬, PBB, PBDE의 경우 중량기준(Wt)으로 0.1% 미만, 카드뮴의 경우는 0.01% 미만이어야 함
- 낙하 성능
 - 제품의 무게가 1kg 이하인 경우는 0.25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킨 후 정상 작동하여야 함
 - 제품의 무게가 1kg~10kg 이하인 경우는 0.1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킨 후 정상 작동하여야 함
 - 제품의 무게가 50kg 이하인 경우는 0.05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킨 후 정상 작동하여야 함

□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기본적인 안전요건을 규정함

-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소재가 "STS 430" 일 경우 Cr 함량은 16~18%, 소재가 "STS 301" 일 경우 Cr 함량은 18~20%로 함
-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Pb 성분 함량은 0.3% 이하로 함

3. 「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 표시기준」 제정(안) 내용

- 제정(안)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2009. 11.9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- 다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- ※ 연락처 :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
-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(우 427 - 723)
- 전화/팩스 : 02-509-7246~9/02-509-7302